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옥 의원 발의)

의안 번호	765

발 의 년 월 일 : 2023년 05월 30일
발 의 자 : 김영옥 의원(1명)
찬 성 자 : 강석주, 경기문, 고광민, 곽향기, 김경훈, 김규남, 김길영,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원중, 김재진, 김지향, 김춘곤, 김태수, 김형재, 남궁역, 남창진, 도문열, 박강산, 박상혁, 박ㆍ석, 박성연, 박영한, 박춘선, 박칠성, 서상열, 송경택, 신복자, 옥재은, 유만희, 유정인, 윤기섭, 윤영희, 이경숙, 이병윤, 이상욱, 이새날, 이종배, 이종태, 임춘대, 장태용, 채수지, 최민규, 최유희, 허ㆍ훈, 홍국표, 황유정, 황철규 의원(49명)

1. 제안이유

○ 우리나라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가입국 중 최하위이며, 이 중 서울시의 합계출산율은 전국 최저인 0.59명으로 저출생 문제가 심각함.

○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공의 영역에서 보다 다자녀 가족을 우대함으로써 다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이에 다자녀 가족이 서울시의 여성관련시설인 여성발전센터의 직업교육, 생활문화교육 등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 면제 근거를 마련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안을 공공영역에서부터 실시하고 이러한 분위기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게 여성발전센터의 직업교육 및 보육실, 생활문화교육의 이용료 면제 근거를 규정함 (안 제19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지방자치법」, 「양성평등기본법」

다. 기타 : 신·구조문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7호 중 “‘다둥이 행복 카드’ 소지”를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로 한다.

제19조제3항제1호 단서 중 “각각 100분의 50을,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두 자녀 이상의 ‘다둥이 행복 카드’ 소지자에게는 100분의 20”을 “100분의 50”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7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생활문화교육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이용료 면제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교육이용) ① (생 략)	제17조(교육이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우선적으로 해당 교육과정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둥이 행복 카드’ 소지	7.----------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이용료의 감면 등) ①·② (생 략)	제19조(이용료의 감면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제1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규정 및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여성발전센터의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줄일 수 있다.	③ ----------.
1. 제1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업교육과정 및 보육실을 이용하는 경우 : 해당 이용료 각각 면	1. ----------

제. 다만, 제17조제2항제1호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에게는 각각 100분의 50을,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두 자녀 이상의 '다둥이 행복 카드' 소지자에게는 100분의 20을 줄인다.	--. ---------- ---------- ---------- 100분의 50-------.
<신 설>	2. 제17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생활문화교육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이용료 면제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3.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여성발전센터의 이용료를 결제하는 경우 : 100분의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용료를 줄일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이용료를 줄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